

# 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자동차부품의 지능화, 전자화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 연구와 협력 활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.) 산학협력단에 설치한 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하며, 영문명은 “The Center for Automotive Mechatronics Parts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센터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(개정 2010. 6. 24.)

1. 전자화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관련 산학 협동체계 구축
  - 가.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기초, 응용기술, 평가 생산 기술 개발
  - 나. 산업현장 애로 기술해결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
  - 다. 현장인력 재교육과 고급 전문인력 양성
  - 라. 기술정보제공과 기술자문
2. 자동차 부품 기술 관련 학술연구
3. 타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와 정보교환
4. 학술회지 발간과 학술강연회 개최
5.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직

**제3조(구성)** 센터에 사무국과 친환경·지능형자동차부를 두며, 사무국에 행정팀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1. 2. 8., 2016. 8. 1.)

**제4조(업무분담)** ① 사무국은 친환경·지능형자동차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6. 8. 1.)

- ② 친환경·지능형자동차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1. 2. 8., 2016. 8. 1.)
1.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센터(RIC)사업의 전자화자동차부품개발 관련 장비활용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업무
  2. 지능형자동차 관련 교내·외 기술개발과 성과확산 및 신규사업유치 업무
  3. 클린디젤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신규사업유치 업무
  4. 저공해자동차부품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 및 기업지원 업무

③ (삭제 2016. 8. 1.)

④ (삭제 2011. 2. 8.)

⑤ (삭제 2011. 2. 8.)

**제5조(구성)** ① ~ ③ (삭제 2011. 2. 8.)

**제6조(조직)**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(개정 2010. 6. 24., 2011. 2. 8., 2016. 8. 1., 2019. 2. 1.)

1. 센터장 1명
2. 부장 1명
3. 운영위원 약간 명

② 사무국에 행정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센터에 전임연구원, 위촉연구원, 병역특례요원, 기술직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결정한다.

**제7조(임면)**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(개정 2010. 10. 1., 2011. 2. 8., 2019. 2. 1.)

② 부장,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1. 2. 8., 2012. 6. 15., 2019. 2. 1.)

③ 직원과 조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을 따른다.(개정 2010. 9. 2. 1.)

④ 전임연구원, 병역특례요원 및 위촉연구원의 임면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거쳐 따로 정한다.(개정 2019. 2. 1.)

**제8조(임무)**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.(개정 2010. 6. 24., 2011. 2. 8.)

② (삭제 2019. 2. 1.)

③ 부장은 친환경·지능형자동차부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6. 8. 1.)

④ (삭제 2011. 2. 8.)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9조(설치)** 센터의 재정, 행정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(구성)**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·평가기관 소속인사의 당연직 위원과 교내외 위촉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, 부장이 간사가 된다.(개정 2011. 2. 8., 2016. 3. 7., 2016. 8. 1., 2019. 2. 1.)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회의)**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(개정 2011. 2. 8.)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0. 6. 24.)

1. 예산과 결산

2. 사업계획

3. 규정의 제정,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### 제4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

**제13조(설치) ~ 제17조(심의사항)** (삭제 2018. 7. 9.)

### 제5장 평가자문위원회

**제18조(설치) ~ 제21조(심의사항)**(삭제 2012. 6. 15.)

### 제6장 재정

**제22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(개정 2010. 6. 24.)

1. 우리 대학교 연구보조금
2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조금
3. 산업계의 연구보조금
4. 그 밖의 수입

**제23조(회계)** 센터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 단,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.

**제24조(연구비)** 센터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5조(예·결산과 사업)** 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,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산학협력단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0. 6. 24., 2011. 2. 8.)

## 제7장 기타

**제26조(특별위원회)**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지역 업체, 완성차업체,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과제선정 및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27조(시설 및 장비의 이용)**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1. 2. 8.)

②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(개정 2011. 2. 8.)

③ 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이용절차는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1. 2. 8.)

**제28조(보칙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 부칙

1.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